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¹

[차 례]²

머리말

전문 (前文)

제 1 장 기본권 (基本權)

[제 1 조] 인간의 존엄, 국가권력의 기본권에의 구속

[제 2 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생명권, 신체의 불가침, 신체의 자유

[제 3 조] 법 앞의 평등, 남녀동등권, 차별금지

[제 4 조]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집총병역거부

[제 5 조] 의사표현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방송, 예술과 학문의 자유

[제 6 조] 혼인과 가족

[제 7 조] 학교제도

[제 8 조] 집회의 자유

[제 9 조] 단체결사의 자유

¹이는 1949년 5월 23일 공포(연방법률공보, 1쪽)되었고, 2005년 5월 현재 발효 중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번역은 최근의 개정인 2002년 7월 26일의 제 51차 개정(연방법률공보 I, 2863쪽)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역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독일 내의 주석서, 법률용어사전, 그리고 그 밖에 대한민국에 이미 출판되어 있거나 발간되어 있는 이하의 문헌들을 참조, 비교·검토하였음을 밝힌다.

대검찰청 검찰 21세기연구기획단, 법률용어대역집, 대검찰청, 1995.

보도 피로트/베른하르트 슈팅크 공저, 정태호 역, 독일기본권개론, 헌법재판소, 2000, 부록 I.

양창수 역, 독일민법전, 박영사, 1999.

콘라드 헛세 저, 계획열 역,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부록.

클라우스 슈테른, 헌법, 슈테른 외 공저, 김용한/이순철 공역, 독일법의 개관, 대왕사, 1986, 21-45쪽.

²차례와 머리말, 각 조마다 꺾음괄호 옆에 부기한 표제는 원래 독일기본법의 일부가 아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역자가 붙인 것으로, 주로 C. F. Müller 출판사의 Staats- und Verwaltungsrecht Bundesrepublik Deutschland, 37., neu bearbeitete Auflage, 2004와 http://www.datenschutz-berlin.de/recht/de/gg/gg1_de.htm (Stand: Mai 2005)를 참조하였다.

- [제 10 조] 서신의 비밀, 우편의 비밀, 통신의 비밀
- [제 11 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 12 조] 직업의 자유
- [제 12a 조] 병역의 의무, 대체복무
- [제 13 조] 주거의 불가침
- [제 14 조] 재산권, 상속권, 공용수용
- [제 15 조] 사회화
- [제 16 조] 국적이탈, 범죄인의 인도
- [제 16a 조] 망명권
- [제 17 조] 청원권
- [제 17a 조] 복무의무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
- [제 18 조] 기본권 실효
- [제 19 조] 기본권의 제한, 재판청구권의 보장

제 2 장 연방 (聯邦)과 지방 (支邦)

- [제 20 조] 국가기초규정, 저항권
- [제 20a 조] 자연적 생활기반
- [제 21 조] 정당
- [제 22 조] 연방의 국기
- [제 23 조] 유럽연합
- [제 24 조] 고권의 이양
- [제 25 조] 국제법과 연방법
- [제 26 조] 침략전쟁의 금지, 전쟁무기
- [제 27 조] 상선단
- [제 28 조] 지방헌법, 지방자치행정
- [제 29 조] 연방영역의 재편성
- [제 30 조] 지방(支邦)의 권한
- [제 31 조] 연방법의 우위

- [제 32 조] 외무관계
- [제 33 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 [제 34 조] 공직의무위반에 있어서의 책임
- [제 35 조] 사법공조, 직무공조, 재해공조
- [제 36 조] 연방관청의 구성
- [제 37 조] 연방강제

제 3 장 연방의회 (聯邦議會)

- [제 38 조] 선거원칙, 대의제적 위임, 선거권의 부여
- [제 39 조] 의회기, 연방의회의 집회
- [제 40 조] 의장단, 의사규칙
- [제 41 조] 선거심사
- [제 42 조] 공개원칙과 다수결원칙
- [제 43 조] 출석요구, 출석권
- [제 44 조] 조사위원회
- [제 45 조] 유럽연합사무위원회
- [제 45a 조]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 [제 45b 조] 국방전권위원
- [제 45c 조] 청원위원회
- [제 46 조] 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 [제 47 조] 의원의 증언거부권
- [제 48 조] 의원의 청구권
- [제 49 조] (폐지)

제 4 장 연방참사원 (聯邦參事院)

- [제 50 조] 임무
- [제 51 조] 구성
- [제 52 조] 의장, 의사규칙

[제 53 조] 연방정부의 참가

제 4a 장 공동위원회

[제 53a 조] 구성, 절차

제 5 장 연방대통령

[제 54 조] 선거와 임기

[제 55 조] 겸직금지

[제 56 조] 공직선서

[제 57 조] 권한대행

[제 58 조] 부서

[제 59 조] 국제법상의 대표, 조약에의 동의

[제 59a 조] (폐지)

[제 60 조] 임면, 사면, 면책특권

[제 61 조] 대통령 탄핵소추

제 6 장 연방정부

[제 62 조] 구성

[제 63 조] 연방수상의 선출과 임명

[제 64 조] 연방장관, 공직선서

[제 65 조] 지킴권한, 관할주의원칙, 합의제원칙

[제 65a 조] 군대의 지휘

[제 66 조] 겸직금지

[제 67 조] 불신임투표

[제 68 조] 신임문제

[제 69 조] 연방수상의 대리

제 7 장 연방의 입법

[제 70 조] 연방과 지방의 입법

[제 71 조] 전속적 입법

[제 72 조] 경합적 입법

[제 73 조] 전속적 입법사항

[제 74 조] 경합적 입법사항

[제 74a 조] 공직 근무에 있어서 급여와 급양에 관한 경합적 입법

[제 75 조] 대강입법

[제 76 조] 법률안

[제 77 조] 법률의 의결, 연방참사원의 참여권

[제 78 조] 법률의 성립

[제 79 조] 기본법의 개정

[제 80 조] 법규명령

[제 80a 조] 긴장사태

[제 81 조] 입법긴급사태

[제 82 조] 서명, 공고, 법률의 발효

제 8 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제 83 조] 지방을 통한 연방법률의 집행

[제 84 조] 연방감독 하의 지방행정

[제 85 조] 지방의 위임행정

[제 86 조] 연방고유의 행정

[제 87 조] 연방고유행정의 대상

[제 87a 조] 군대의 편성과 투입

[제 87b 조] 연방국방행정

[제 87c 조] 핵에너지

[제 87d 조] 항공교통행정

- [제 87e 조] 철도
- [제 87f 조] 우편제도와 통신
- [제 88 조] 연방은행, 유럽중앙은행
- [제 89 조] 연방수로행정
- [제 90 조] 연방도로
- [제 91 조] 국내긴급사태

제 8a 장 공동과제 (공동과업)

- [제 91a 조] 지방과제에 관한 연방의 협력권
- [제 91b 조] 교육계획, 학술연구장려

제 9 장 사법 (司法)

- [제 92 조] 사법권
- [제 93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
- [제 94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 [제 95 조] 연방법원
- [제 96 조] 기타의 연방법원
- [제 97 조] 법관의 독립
- [제 98 조] 법관의 법적 지위
- [제 99 조] 지방법률에 의한 연방의 재판관할
- [제 100 조] 규범통제
- [제 101 조] 특별법원
- [제 102 조] 사형
- [제 103 조] 법적 진술권, 가벌성
- [제 104 조] 자유제한과 자유박탈

제 10 장 재정제도 (금융제도)

- [제 104a 조] 비용분담, 재정지원, 책임
- [제 105 조] 입법권
- [제 106 조] 수익고권, 재정배정
- [제 106a 조] 근거리여객운송을 위한 지방지분
- [제 107 조] 지역적 수입, 지방재정의 조정, 추가배정
- [제 108 조] 재무행정, 재정재판
- [제 109 조] 연방과 지방의 예산운용
- [제 110 조] 예산안
- [제 111 조] 긴급예산
- [제 112 조] 예산초과
- [제 113 조] 지출을 증액하고 수입을 감소하는 법률
- [제 114 조] 회계검사, 책임면제
- [제 115 조] 신용차금, 보증인수

제 10a 장 방위사태

- [제 115a 조] 방위사태, 확인
- [제 115b 조] 명령권의 이관
- [제 115c 조]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제도
- [제 115d 조] 방위사태에서의 입법절차
- [제 115e 조]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대체
- [제 115f 조] 연방정부의 권한확장
- [제 115g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기능
- [제 115h 조] 연장된 의회기와 임기
- [제 115i 조] 지방정부의 특별권한
- [제 115k 조] 규범의 효력
- [제 115l 조] 공동위원회의 법률의 폐지, 방위사태의 종료

제 11 장 경과규정 (經過規定) 및 종결규정 (終結規定)

[제 116 조] 독일국적

[제 117 조] 제 3 조 제 2 항 및 제 11 조에 관한 경과규정

[제 118 조] 남서독일영역의 재구성

[제 118a 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재편성

[제 119 조] 난민과 피추방자

[제 120 조] 전쟁결과부담의 분담

[제 120a 조] 부담조정의 실시

[제 121 조] 다수 개념

[제 122 조] 지금까지의 입법권한의 폐지

[제 123 조] 구법의 효력존속

[제 124 조] 전속적 입법대상의 연방법으로서의 효력존속

[제 125 조] 경합적 입법대상의 연방법으로서의 효력존속

[제 125a 조] 1994 년 11 월 15 일 이전에 공포된 연방법의 효력존속

[제 126 조] 효력존속에 관한 의견의 대립

[제 127 조]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에 관한 법

[제 128 조] 지시권의 존속

[제 129 조]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권의 효력 존속

[제 130 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이전

[제 131 조] 공직의 법적 관계

[제 132 조] 공직 근무자

[제 133 조] 통합경제지역의 권리승계

[제 134 조] 제국재산의 인수

[제 135 조] 지역변경이나 소멸시의 재산이전

[제 135a 조] 채무의 이행

[제 136 조] 연방참사원의 최초의 집회

[제 137 조] 공무원의 피선거격의 제한

[제 138 조] 공증인 제도의 변경

- [제 139 조] 해방법률의 효력 존속
- [제 140 조] 바이마르헌법의 국가교회법적 규정의 인수
- [제 141 조] 종교수업 (브레멘 조항)
- [제 142 조] 지방헌법에서의 기본권
- [제 143 조] 입회조건부 경과규정
- [제 143a 조] 연방철도의 전환
- [제 143b 조] 연방우편의 전환
- [제 144 조] 비준
- [제 145 조] 공포
- [제 146 조] 헌법으로의 교체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머리말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강변 본의 공개회의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국민대표를 통해, 참가한 독일 지방의 3분의 2를 넘는 다수에 의해 채택되었음을 확정하였다. 이 확정에 근거하여 헌법제정회의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기본법을 서명하고 공포한다. 기본법은 이에 제 145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전문 (前文)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의지로 충만하여, 독일국민은 헌법제정권력을 근거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텐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쉘레스비히-홀스타인과 튀빙엔지방의 독일인은 자유(自由)로운 자결(自決)으로써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1 장 기본권 (基本權)

[제 1 조] 인간의 존엄, 국가권력의 기본권에의 구속

[제 1 항] 인간의 존엄(尊嚴)은 불가침(不可侵)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 2 항] 따라서 독일 국민은 불가침(不可侵), 불가양(不可讓)의 인권(人權)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平和) 그리고 정의(正義)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제 3 항]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 2 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생명권, 신체의 불가침, 신체의 자유

[제 1 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道德律)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發現)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항]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毀損)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不可侵)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 3 조] 법 앞의 평등, 남녀동등권, 차별금지

[제 1 항]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제 2 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사실적인 실현을 증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3 항] 누구도 성별(性別), 혈통(血統), 종족(種族),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特惠)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도 장애(障礙)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집총병역거부

[제 1 항]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적 신념의 자유는 불가침(不可侵)이다.

[제 2 항] 종교행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제 3 항]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執銃兵役)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5 조] 의사표현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방송, 예술과 학문의 자유

[제 1 항] 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신문(新聞)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報道)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檢閱)은 금지된다.

[제 2 항] 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 3 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教授)는 자유롭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忠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제 6 조] 혼인과 가족

[제 1 항]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2 항] 자녀의 부양(扶養)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감시한다.

[제 3 항] 교육권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자녀가 방치(放置)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교육권자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제 4 항]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扶助)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5 항] 혼인외의 출생자(婚姻外의 出生者)는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입법을 통해 혼인중의 출생자(婚姻中の 出生者)와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7 조] 학교제도

[제 1 항]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제 2 항] 교육권자는 자녀의 종교교육 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제 3 항] 종교교육은 종교와 관계가 없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公立學校)에서는 정규교과목이 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단체의 교리(敎理)에 따라 행해진다. 어떤 교사(教師)도 자기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4 항] 사립학교(私立學校)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公立學校)를 대신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認可)를 필요로 하며 지방법률에 따른다. 사립학교는 그 교육목적, 설비 및 교사의 학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한 인가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제적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제 5 항] 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교육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가 교파(交派)의 구별이 없는 연합학교(聯合學校), 특정교파학교(特定敎派學校) 또는 세계관학교(世界觀學校)로서 설립되어야 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성질의 공립초등학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경우에만 인가되어야 한다.

[제 6 항] 예비학교(豫備學校)는 폐지된다.

[제 8 조] 집회의 자유

[제 1 항] 모든 독일인은 신고(申告)나 허가(許可)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항] 옥외집회(屋外集會)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9 조] 단체결사의 자유

[제 1 항] 모든 독일인은 단체(團體)와 조합(組合)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항]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협조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제 3 항]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정(協定)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 12a 조, 제 35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87a 조 제 4 항과 제 91 조에 의한 조치는, 제 1 문의 의미에서의 단체가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노동쟁의(勞動爭議)에 대하여 취해질 수 없다.

[제 10 조] 서신의 비밀, 우편의 비밀, 통신의 비밀

[제 1 항] 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제 2 항] 그 제한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³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어떤 지방(支邦)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爭訟手段)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 항] 모든 독일인은 전(全)연방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제 2 항] 이 권리는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연방 또는 어떤 지방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위험이나 자연재해 또는 특별히 중대한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방치(放置)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2 조] 직업의 자유

[제 1 항]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될 수 있다.

[제 2 항]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공적(公的) 병역의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일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 3 항] 강제노동은 법원(法院)이 명(命)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³ 기본법 제 10 조에 관한 2001 년 6 월 26 일자 법률 (연방법률공보 I, 1254 쪽).

[제 12a 조] 병역의 의무, 대체복무

[제 1 항] 만 18 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 2 항] 양심상의 이유로 징집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동(同)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무관한 대체복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 3 항]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복무를 위해 징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목적에 위하여 근로관계를 갖도록 민간적 의무(義務)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갖도록 의무지우는 것은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행정의 고권적(高權的)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 1 문에 의한 근로관계는 군대, 군보급분야 및 공행정(公行政)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급양(級養)분야에서 근로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 4 항] 방위사태시 민간의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주(常駐)군사의료기관에서의 민간역무수요가 지원(志願)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만 18 세 이상 만 55 세까지의 여자를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징집복무를 해서는 안된다.

[제 5 항] 방위사태발생 이전에는 제 80a 조 제 1 항에 따라서만 제 3 항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 3 항에 따른 의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 1 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 항] 방위사태시 제 3 항 제 2 문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할 독일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방위사태발생 이전에는 제 5 항 제 1 문이 준용된다.

[제 13 조] 주거의 불가침

[제 1 항] 주거는 불가침이다.

[제 2 항] 수색(搜索)은 판사에 의해서만 명(命)하여지며 지체(遲滯)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명하여질 수 있다. 수색은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제 3 항] 법률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한 특별히 중대한 범행을 누군가가 저질렀다는 혐의를 특정한 사실이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의 탐지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가망이 없다면, 범행의 소추를 위하여 판사의 명령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머무는 것으로 추측되는 주거의 감청을 위한 기술적 매체가 설치될 수 있다. 그 조치에는 기한이 붙여져야 한다. 그 명령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체재판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체(遲滯)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 4 항]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특히 공동위험이나 생명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주거의 감시를 위한 기술적 매체는 법률에 근거한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체(遲滯)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조치는 또한 다른 법률로 정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판사의 결정이 지체없이 추완(追完)되어야 한다.

[제 5 항] 기술적 매체가 오로지 주거에 투입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의도된 경우에는 그 조치는 법률로 정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관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한 그 밖의 가치판단은 단지 형사소추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사전에 조치의 합법성이 판사에 의해 확정되었을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지체(遲滯)될 위험이 있는 경우 판사에 의한 결정은 지체없이 추완(追完)되어야 한다.

[제 6 항]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매년, 제 3 항에 의하거나 제 4 항에 의한 연방의 관할영역에서 그리고 법관에 의한 심사의 필요에 따라, 제 5 항에 의해 이루어진 기술적 매체의 설치에 관하여 보고한다.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심사위원회는 이 보고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한 통제를 행사한다.

[제 7 항] 그 밖에도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公共)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急迫)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주택난(住宅難)을 덜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제 14 조] 재산권, 상속권, 공용수용

[제 1 항]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 2 항]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公共福利)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 3 항] 공용수용(公用收用)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公用收用)은 보상(補償)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衡量)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正統法院)에 제소(提訴)할 길이 열려있다.

[제 15 조] 사회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社會化)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이전될 수 있다. 보상에 관해서는 제 14 조 제 3 항 제 3 문과 제 4 문이 준용된다.

[제 16 조] 국적이탈, 범죄인의 인도

[제 1 항]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無國籍)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제 2 항] 어떤 독일인도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 법치국가 원칙이 보장되는 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나 국제재판소에의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그밖의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제 16a 조] 망명권

[제 1 항]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제 2 항]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나 난민(難民)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과 인권(人權)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적용이 보장되어 있는 다른

제 3 국으로부터 입국(入國)한 자는 제 1 항을 원용(援用)할 수 없다. 제 1 문의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 외의 국가들은 연방참사원(聯邦參事院)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 문의 경우 체류(滯留)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반하여 제기된 권리구제절차와 상관없이 집행될 수 있다.

[제 3 항]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에 의하여 법적 상황, 법적용과 일반적인 정치적 박해(迫害)와 비인간적(非人間的)이거나 비열(卑劣)한 형벌이나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이 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정치적으로 박해되고 있다는 가정(假定)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정치적으로 박해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제 4 항]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제 3 항의 경우와, 명백하게 이유없거나 명백하게 이유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경우에는 동(同)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진지한 의혹이 존재할 때에만 법원에 의하여 정지된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지체된 제출은 고려되지 않는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 5 항]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는 유럽공동체 회원국 상호간의 그리고 조약국가에서 그 적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를 준수하면서 망명권 결정의 상호 승인을 포함한 망명신청 심사에 대한 권한규정을 제정하는 제 3 국들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에 반(反)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청원권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문서(文書)로써 관할기관과 의회에 청원(請願) 또는 소원(訴願)할 권리를 가진다.

[제 17a 조] 복무의무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

[제 1 항] 병역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체복무의 소속원(所屬員)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기간 중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기본권(제 5 조 제 1 항 제 1 문 전단),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 8 조) 그리고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원을 할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 청원권 (제 17 조)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2 항]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기여하는 법률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제 11 조)과 주거의 불가침의 기본권(제 13 조)의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기본권 실효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신문(新聞)의 자유(제 5 조 제 1 항), 교수(教授)의 자유(제 5 조 제 3 항), 집회의 자유(제 8 조), 결사의 자유(제 9 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 10 조), 재산권(제 14 조) 또는 망명권(제 16a 조)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들의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와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고된다.

[제 19 조] 기본권의 제한, 재판청구권의 보장

[제 1 항] 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적 경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법률은 또한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적시(摘示)해야 한다.

[제 2 항] 기본권의 본질적(本質的)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항] 기본권이 그 본질상 내국법인(內國法人)에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제 4 항] 공권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권리구제절차가 열려있다. 다른 관할권의 이유가 없는 한, 통상적(通常的)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된다. 제 10 조 제 2 항 제 2 문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 2 장 연방 (聯邦)과 지방 (支邦)

[제 20 조] 국가기초규정, 저항권

[제 1 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이다.

[제 2 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고 입법, 집행 및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제 3 항]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제 4 항]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를 폐제(廢除)하려고 기도(企圖)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저항(抵抗)할 권리를 가진다.

[제 20a 조] 자연적 생활기반

국가는 또한 장래 세대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서,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권 및 사법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제 21 조] 정당

[제 1 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 항]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제(廢除)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 3 항]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22 조] 연방의 국기

연방의 국기 (國旗)는 검정, 빨강, 노랑색이다.

[제 23 조] 유럽연합

[제 1 항] 통일된 유럽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원칙들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에 구속되며 이 기본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본권보호를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발전에 협력한다. 연방은 이를 위해 법률에 의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 하에 고권(高權)을 이양(移讓)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설립, 그리고 이 기본법이 내용상 개정 또는 보완되거나 그러한 개정이나 보완이 가능해지는 그 조약상의 기초 및 유사한 규정들의 개정에 대하여는 제 79 조 제 2 항과 제 3 항이 적용된다.

[제 2 항] 유럽연합의 사무에는 연방의회(聯邦議會)가 그리고 지방(支邦)은 연방참사원(聯邦參事院)을 통해서 참여한다. 연방정부(聯邦政府)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 3 항]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법제정행위에 대한 자신의 참여에 앞서서 연방의회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정부는 협의시에 연방의회의 입장표명을 고려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 4 항] 연방참사원은 상응(相應)하는 국내적 조치에 참여해야 하는 한에서 또는 지방(支邦)이 국내적으로 권한이 있는 한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제 5 항] 연방의 전속적(專屬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 이익이 관계되는 한, 또는 그 밖에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한에서 연방정부는 연방 참사원의 입장표명을 고려한다. 지방의 입법권한, 그 관청의 시설이나 그 행정절차들이 중점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 연방의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러한 한 연방참사원의 견해가 결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연방의 국가전체적인 책임은 견지(堅持)되어야 한다. 지출(支出)의 인상이나 또는 연방에 대한 수입(收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6 항] 지방의 전속적 입법권한이 중점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한 권한의 행사는 연방으로부터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지명된 지방의 대표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동(同) 권한의 행사는 연방정부의 참여와 표결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연방의 국가전체적인 책임은 견지되어야 한다.

[제 7 항]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 24 조] 고권의 이양

[제 1 항] 연방은 법률에 의하여 국제기구에 고권(高權)을 이양(移讓)할 수 있다.

[제 1a 항] 지방이 국가적 권한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이행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한에서 지방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인접국제기구(隣接國際機構)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제 2 항] 연방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 내의 그리고 세계 각국 간의 평화적(平和的), 항구적(恒久的) 질서를 달성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그 고권을 제한(制限)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제 3 항]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 포괄적, 의무적인 국제중재재판(國濟仲裁裁判)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5 조] 국제법과 연방법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그것은 법률에 우선하고 연방영역의 주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제 26 조] 침략전쟁의 금지, 전쟁무기

[제 1 항]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攪亂)시키기에 적합하고 교란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제 2 항] 전쟁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武器)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 수송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27 조] 상선단

전(全) 독일상선은 하나의 통일상선단을 구성한다.

[제 28 조] 지방헌법, 지방자치행정

[제 1 항] 지방(支邦)의 헌법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모든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방(支邦), 도(道) 및 군(郡)에서 주민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을 가져야 한다. 도(道) 및 군(郡)의 선거에서는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국적을

소유하는 사람도 유럽공동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회는 군(郡)에서 선출된 단체를 대리할 수 있다.

[제 2 항] 군(郡)에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군연합(상급지방자치단체)도 그 법률적 과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권(自治權)을 가진다. 자치의 보장은 또한 독자적인 재정적 책임의 기초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기초에는, 세율권과 함께 군의 권한에 해당되는 경제력과 관련한 세원이 포함된다.

[제 3 항] 연방은 지방의 헌법적 질서가 기본권과 본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제 29 조] 연방영역의 재편성

[제 1 항] 연방영역은 지방이 그 크기와 능력에 따라 그들에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적 결속, 역사적·문화적 관련, 경제적 합목적성 및 광역계획과 지방계획의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 항] 연방영역의 재편성조치는 국민표결(國民表決)에 의한 확인을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지방들의 의견은 청취되어야 한다.

[제 3 항] 국민표결은, 그 영역 또는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지방이 형성되거나 지방의 경계가 새로 그어지는 경우, 그들 관련지방에서 행해진다. 관련지방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지방이 형성되거나 지방의 경계가 새로이 그어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투표(投票)가 행해져야 한다. 새로운 지방을 형성하거나 지방의 경계를 새로이 긋기 위한 국민표결은 그 지방의 장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지방소속이 동일하게 변경될 관련지방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일부에서 다함께 각각 과반수가 그 변경에 동의할 때에 가결(可決)된다. 국민표결은 관련 지방들 중의 한 지방의 영역에서 과반수가 변경을 거부하면 가결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관련된 지방에의 소속이 변경될 영역 일부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개정(改正)에 동의할 때에는

무시된다. 단, 관련된 지방의 전체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변경을 거부할 때에는 예외이다.

[제 4 항] 그 부분들이 여러 지방에 걸쳐있고 최소한 100 만의 인구를 가지는, 관련은 되나 경계가 나누어 지는 거주지역과 경제구역에서, 연방의회선거권자 10분의 1이 이러한 지역을 단일한 지방소속으로 해줄 것을 국민청원(國民請願)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소속을 제 2 항에 따라 변경할 지 여부를 결정하든지 관련지방들에서 국민문의(國民問議)를 실시하든지 연방법률로 2년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 5 항] 국민문의는 법률에서 제안된 지방소속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법률은 상이(相異)한 그러나 둘을 넘지 않는 제안을 국민문의에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지방소속의 변경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지방소속이 제 2 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를 연방법률로 2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문의에 제시된 제안이 제 3 항 제 3 문과 제 4 문의 기준(規準)에 따른 동의를 얻으면 국민표결에 의한 확인을 더 이상 요하지 않는, 제안된 지방의 형성에 관한 연방법률을 국민문의의 실시 후 2년 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제 6 항] 국민표결과 국민문의에 있어서의 다수란 그것이 적어도 연방의회선거권자의 4분의 1을 포함하는 투표자 과반수의 다수이다. 그 밖에 국민표결, 국민청원, 국민문의에 대한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국민청원이 5년의 기간 내에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할 수도 있다.

[제 7 항] 지방의 기존영역의 그 밖의 변경은, 지방소속이 변경되어야 할 영역이 5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지방 간의 국가조약(國家條約)에 의하여 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와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관련된 군(郡)과 도(道)의 청문(廳聞)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 8 항] 지방(支邦)은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한 새로운 편성을 지방간 조약(條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관계된 군(郡)과 도(道)는 의사를 개진하여야

한다. 지방간 조약은 각 참여지방에서의 국민표결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조약이 지방의 일부지역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이 일부지역에서의 국민표결에 국한하여 확인될 수 있다. 제 5 문 후단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표결의 경우에 최소한 연방의회 선거권자의 4분의 1 을 포함하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지방간 조약은 연방의회의 동의(同意)를 요한다.

[제 30 조] 지방(支邦)의 권한

국가적 권능(權能)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支邦)의 사항이다.

[제 31 조] 연방법의 우위

연방법은 지방법에 우선한다.

[제 32 조] 의무관계

[제 1 항] 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것은 연방의 사항이다.

[제 2 항] 어떤 지방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되는 조약 체결시에는 체결 전의 적당한 때에 그 지방은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제 3 항] 지방이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 때에는, 지방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3 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제 1 항] 독일인은 누구나 어느 지방에서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2 항] 독일인은 누구나 그의 적성, 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 모든 공직(公職)에 취임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3 항] 시민적·국민적 권리의 향유(享有), 공직취임의 허용, 그리고 공직근무에서 취득하는 권리는 종교적 고백과 무관하다. 누구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관을 갖거나 갖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4 항] 고권적(高權的) 권한의 행사는 보통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직종사자에게 계속적 과제로서 위임(委任)된다.

[제 5 항] 공직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職業公務員制)의 전통적인 모든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제 34 조] 공직의무위반에 있어서의 책임⁴

공무원이 자기에게 위임된 공무수행 중 제 3 자에 대하여 그의 직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 또는 그가 근무하는 단체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 고의(故意) 또는 중과실(重過失)의 경우에는 구상권(求償權)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정규소송(正規訴訟)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사법공조, 직무공조, 재해공조

[제 1 항] 연방과 지방의 모든 관청은 상호 간의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행한다.

[제 2 항]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지방은, 특별히 중대한 경우 경찰이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의 지원 없이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경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事故)의 경우 그 구호를 위하여 지방은 다른 지방의 경찰력, 다른 행정청과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항] 자연재해나 사고가 한 지방 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한에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다른 지방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指示)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와 군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제 1 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⁴ 민법 제 839 조 **[공직의무위반에 있어서의 책임]**

[제 1 항]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 3 자에 대하여 과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그 제 3 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공무원이 단지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2 항] 공무원이 쟁송사건에의 판결에 있어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위반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그로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항] 피해자가 법적 수단을 행사하여 손해를 방지할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태만히 한 때에는 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치는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 밖에도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제 36 조] 연방관청의 구성

[제 1 항] 연방최고관청의 공무원은 모든 지방으로부터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 밖의 연방관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지방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제 2 항] 병역법도 또한 연방이 각 지방으로 분할편성되어 있다는 점과 각 지방의 특별한 향토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 37 조] 연방강제

[제 1 항] 지방이 기본법이나 그 밖의 연방법률에 따라 부과된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강제의 방법으로 그 지방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항] 연방강제의 집행을 위하여 연방정부나 그 수임자(受任者)는 모든 지방과 그 관청에 대한 지시권(指示權)을 가진다.

제 3 장 연방의회 (聯邦議會)

[제 38 조] 선거원칙, 대의제적 위임, 선거권의 부여

[제 1 항]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들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

[제 2 항] 만 18 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成年)의 연령에 달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항]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39 조] 의회기, 연방의회의 집회

[제 1 항] 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유보하여 4 년마다 선거된다. 의회기는 새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새로운 선거는 의회기 개시 후 빨라도 46 개월 이후 늦어도 48 개월 이전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해산(解散)된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된다.

[제 2 항] 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 후 30 일 이내에 집회된다.

[제 3 항] 연방의회는 회의의 종료와 재개(再開)에 관하여 정한다. 연방의회의 의장(議長)은 의회를 보다 일찍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40 조] 의장단, 의사규칙

[제 1 항] 연방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및 서기(書記)를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제 2 항] 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家宅權)과 경찰권(警察權)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許可)없이 연방의회의 공간 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없다.

[제 41 조] 선거심사

[제 1 항]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사항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원이 그 자격(資格)을 상실했는지의 여부도 결정한다.

[제 2 항]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제 3 항]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42 조] 공개원칙과 다수결원칙

[제 1 항] 연방의회는 공개로 심의(審議)한다. 의원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가 제의하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에 의해 공개가 배제될 수 있다. 이 제의(提議)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 항] 연방의회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의사규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제 3 항]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해지는 진실한 보고(報告)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43 조] 출석요구, 출석권

[제 1 항]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어느 구성원의 출석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제 2 항] 연방참사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라도 청취되어야 한다.

[제 44 조] 조사위원회

[제 1 항] 연방의회는 공개심의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의원의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설치할 의무를 진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제 2 항] 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절히 적용된다. 서신(書信), 우편 및 통신의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3 항] 법원과 행정관청은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제 4 항]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司法的) 토의(討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의한 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 법원(法院)은 자유롭다.

[제 45 조] 유럽연합사무위원회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사무위원회를 둔다. 연방의회는 이 위원회에 제 23 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대정부(對政府) 권한을 행사하도록 수권(授權)할 수 있다.

[제 45a 조]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제 1 항] 연방의회에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둔다.

[제 2 항] 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가진다. 그 구성원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제 3 항] 제 44 조 제 1 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5b 조] 국방전권위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방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45c 조] 청원위원회

[제 1 항] 연방의회는 제 17 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請願)과 소원(訴願)을 다룰 청원위원회를 둔다.

[제 2 항] 소원(訴願)을 심사할 위원회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46 조] 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제 1 항] 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재판상(裁判上) 또는 직무상(職務上)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의회의 외부(外部)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중상적(中傷的)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항] 의원은 현행범(現行犯)인 경우나 그 익일(翌日) 중에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방의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제 3 항] 연방의회의 허락은 더 나아가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모든 그 밖의 제한의 경우에도 필요하며 또한 제 18 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 4 항] 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 18 조에 따른 소송절차, 의원의 구금과 그 신체적 자유에 대한 그밖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 47 조] 의원의 증언거부권

의원은 그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신뢰하여 그에게 사실을 밝힌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가 의원의 자격으로 사실을 밝힌 상대방 사람에 대하여, 또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한 서류의 압수(押收)도 허용되지 아니된다.

[제 48 조] 의원의 청구권

[제 1 항] 연방의회에서 의석(議席)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休暇)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 항] 누구든지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를 방해받아서 안 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解雇)의 통지와 해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 항] 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報酬)청구권을 가진다. 의원은 모든 국유(國有)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49 조] (폐지)

제 4 장 연방참사원 (聯邦參事院)

[제 50 조] 임무

지방(支邦)은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 및 행정과 유럽연합의 사무에 참여한다.

[제 51 조] 구성

[제 1 항] 연방참사원은 지방정부가 임명하고 해임(解任)하는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그 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대리(代理)될 수 있다.

[제 2 항] 각 지방은 최소한 3 표, 200 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은 4 표, 600 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은 5 표, 700 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은 6 표를 가진다.

[제 3 항] 각 지방은 표수(票數)와 동수(同數)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방의 투표는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 52 조] 의장, 의사규칙

[제 1 항] 연방참사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 항]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한다. 최소한 2 지방(支邦)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해야 한다.

[제 3 항] 연방참사원은 최소한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사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審議)는 공개된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제 3a 항] 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사원은 유럽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연방참사원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제 51 조 제 2 항과 제 3 항 제 2 문이 준용된다.

[제 4 항] 지방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수임자(受任者)는 연방참사원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제 53 조] 연방정부의 참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사원과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또 요구가 있으면 참가할 의무를 진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常時) 보고를 받는다.

제 4a 장 공동위원회

[제 53a 조] 구성, 절차

[제 1 항] 공동위원회는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 연방참사원 구성원의 3분의 1로 구성된다. 위원회에 속하는 의원은 교섭단체(交涉團體)의 세력에 비례(比例)하여 연방의회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들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각 지방(支邦)은 지방이 임명한 연방참사원 구성원에 의하여 대표된다. 이들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議事珪則)으로 정한다.

[제 2 항] 연방정부는 방위사태(防衛事態)의 계획에 관해 공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3 조 제 1 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연방대통령

[제 54 조] 선거와 임기

[제 1 항]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토의(討議)없이 선출된다. 연방회의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 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2 항]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 년이다. 연임(連任)은 1 회에 한한다.

[제 3 항] 연방회의는 연방회의의원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의 의회가 선출한 동수(同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제 4 항] 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 일 전에, 임기 전에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시로부터 늦어도 30 일 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회의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 5 항] 의회기만료 후에는 제 4 항 제 1 문의 기한은 연방회의의 첫 집회일로부터 시작된다.

[제 6 항] 연방회의 구성원의 재적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2 차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3 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제 7 항]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55 조] 겸직금지

[제 1 항] 연방대통령은 연방이나 지방의 정부 또는 의회에 속할 수 없다.

[제 2 항] 연방대통령은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有給公職),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할 수 없다.

[제 56 조] 공직선서

연방대통령은 그 취임에 있어 연방회의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그 이익을 증진시키며, 그 장애를 제거하며,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보전하고 수호하며, 나의 의무를

양심껏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의 가호를 받습니다.”

선서는 종교적 서약 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제 57 조] 권한대행

연방대통령의 유고시(有故時) 또는 임기만료 전에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연방참사원의장이 행사한다.

[제 58 조] 부서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유효하려면 연방수상이나 소관 연방장관의 부서(副署)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방수상의 임면(任免), 제 63 조에 의한 연방의회의 해산(解散) 및 제 69 조 제 3 항에 의한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9 조] 국제법상의 대표, 조약에의 동의

[제 1 항]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使節)을 신임(信任)하고 접수(接受)한다.

[제 2 항]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行政協定)에 관해서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제 59a 조] (폐지)

[제 60 조] 임면, 사면, 면책특권

[제 1 항]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任免)한다.

[제 2 항] 연방대통령은 연방을 위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사면권(辭免權)을 행사한다.

[제 3 항] 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移讓)할 수 있다.

[제 4 항] 제 46 조 제 2 항에서 제 4 항까지는 연방대통령에 준용된다.

[제 61 조] 대통령 탄핵소추

[제 1 항] 연방의회나 연방참사원은 기본법 또는 그 밖의 연방법률의 고의적(故意的)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참사원의 표수(票數)의 4분의 1로 발의(發議)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참사원의 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의 소추는 소추기관의 수임자(受任者)에 의하여 행해진다.

[제 2 항]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그 밖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 후 가처분(假處分)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연방정부

[제 62 조] 구성

연방정부는 연방수상(聯邦首相)과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제 63 조] 연방수상의 선출과 임명

[제 1 항]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提請)으로 연방의회에 의하여 토론(討論) 없이 선출된다.

[제 2 항] 연방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 3 항] 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연방의회는 투표 후 14 일 이내에 재적위원의 과반수으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제 4 항] 선출이 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 후 7 일 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 일 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제 64 조] 연방장관, 공직선서

[제 1 항]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면(任免)된다.

[제 2 항]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에서 제 56 조에 규정된 선서(宣誓)를 한다.

[제 65 조] 지침권한, 관할주의원칙, 합의제원칙

연방수상은 정책지침(政策指針)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한다.

연방장관 간의 의견대립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裁可)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 65a 조] 군대의 지휘

국방장관은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가진다.

[제 66 조] 겸직금지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有給公職),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연방의회의 동의없이는 그 감사회에도 속할 수 없다.

[제 67 조] 불신임투표

[제 1 항] 연방의회는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不信任)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제 2 항] 이 동의와 선거 간에는 48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 68 조] 신임문제

[제 1 항] 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동의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21 일 내에 연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가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해산권은 즉시 소멸된다.

[제 2 항] 이 동의와 투표간에는 48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 69 조] 연방수상의 대리

[제 1 항] 연방수상은 1 인의 연방장관을 자신의 대리인(代理人)으로 임명한다.

[제 2 항] 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직(職)은 언제나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集會)와 더불어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직도 연방수상의 직이 다른 사유로 끝날 때 함께 종료한다.

[제 3 항]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의무를 진다.

제 7 장 연방의 입법

[제 70 조] 연방과 지방의 입법

[제 1 항] 지방(支邦)은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입법권을 가진다.

[제 2 항] 연방(聯邦)과 지방(支邦)간의 관할의 획정은 전속적(專屬的) 입법과 경합적(競合的) 입법에 관한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제 71 조] 전속적 입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법률이 명시적(明示的)으로 권한을 위임(委任)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지방이 입법권을 가진다.

[제 72 조] 경합적 입법

[제 1 항] 경합적 입법에 있어서는 연방이 법률에 의하여 그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방이 입법권을 가진다.

[제 2 항] 연방은 이러한 영역에서 연방영역에 있어서의 균등한 생활여건의 조성이나 전체 국가적 이익을 위한 법적 통일 유지 또는 경제적 통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제 3 항] 연방법률에 의하여 전항(前項)의 의미에서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연방법률규정은 지방법(支邦法)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제 73 조] 전속적 입법사항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문제와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국방(國防),
2. 연방에서의 국적(國籍),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국내외에로의 이민 및 범인인도(犯人引渡),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표준도량형과 표준시간,

5. 관세구역과 통상구역(通商區域)의 통일, 통상조약과 항해조약, 상품교역의 자유, 관세와 국경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支拂去來),
6. 항공교통,
- 6a. 전체 또는 과반수가 연방의 재산에 속하는 철도교통(연방철도), 연방철도의 궤도(軌道)의 건설, 유지 및 운영과 이 궤도의 사용료 부과,
7. 우편과 전신제도,
8. 연방과 연방직속(聯邦直屬)의 공법상의 사단(社團)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관계,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권,
10. 다음 사항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의 협력:
 - a) 범죄수사경찰,
 -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지방의 존립과 안전의 보호(헌법보호),
 - c) 폭력의 사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 내에서의 기도(企圖)의 방지, 그리고 연방범죄 수사경찰관서의 설치와 국제적인 범죄진압,
11. 연방용 통계(統計).

[제 74 조] 경합적 입법사항

[제 1 항]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및 행형(行刑), 법원조직, 재판절차, 변호사, 공증인(公證人) 및 법률상담,
2. 호적제도(戶籍制度),
3. 결사법과 집회법,
4.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 및 정주(定住)에 관한 법,
- 4a.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한 법,
5. (폐지)
6. 난민(難民) 및 추방된 자에 관한 사무,

7. 공적부조사업(公的扶助事業),
8. (폐지)
9.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그 복구,
10. 전상자(戰傷者)와 전사자 유족(戰死者 遺族)의 원호(援護), 전쟁포로였던 자에 대한 부조(扶助),
- 10a. 전몰자 묘지(戰沒者 墓地)와 전쟁희생자 및 폭력지배의 희생자 묘지,
11. 경제(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주식제도, 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 11a.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核)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이 목적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핵 에너지의 자유화 또는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 방사능 물질의 제거,
12. 경영조직·근로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
13. 직업훈련지원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振興),
14. 제 73 조와 제 74 조의 사항영역에서 문제되는 공용수용(公用收用)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그 밖의 공동관리경제형태로의 전환,
16. 경제력의 남용예방,
17. 농·임업생산의 진흥, 식량의 확보, 농·임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과 연안어업 및 연안보호,
18. 토지거래, (개발분담금 청구권을 제외한) 토지법 및 농업상의 임차제도, 주거제도, 이주정착제도,
19. 인간과 가축 모두에게 위험한,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그 밖의 치료업의 허가, 약품과 약제 및 마취제와 독극물의 거래,
- 19a. 병원의 경제적 안정과 병원치료수가(病院治療酬價)의 규제,
20. 식량, 기호품, 생활필수품, 사료, 농·임업용의 종자 및 묘목의 거래 보호, 식물의 병해(病害)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동물의 보호,

21. 원양(遠洋)과 근해항행(近海航行) 및 항로표지, 내수항행(內水航行), 기상업무, 해수항로 및 일반운수에 이용되는 내수항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 교통을 위한 지방도로의 건설과 유지, 자동차에 의한 공로(公路)이용료의 징수와 배분,
23. 산악철도를 제외한, 연방철도가 아닌 궤도(軌道),
24. 오물제거, 대기정화 및 소음방지,
25. 국가배상책임,
26. 인간의 인공수정(人工受精), 유전자 정보의 연구 및 인공적 변경과 장기(臟器) 및 조직 이식(移植)에 관한 규정.

[제 2 항] 전항(前項) 제 25 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 74a 조] 공직 근무에 있어서 급여와 급양에 관한 경합적 입법

[제 1 항] 연방이 제 73 조 제 8 호에 따른 전속적(專屬的) 입법권을 갖지 않는 한, 경합적(競合的) 입법은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급여와 급양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 2 항] 제 1 항에 의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3 항] 제 73 조 제 8 호에 의한 연방법률도, 그것이 직위(職位)의 평가를 포함하여 그 급여 및 급양의 구조 또는 사정(査定)에 관해, 제 1 항에 의한 연방법률과 다른 기준 혹은 다른 최저 또는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4 항] 제 1 항과 제 2 항은 지방법관의 급여와 급양에 준용된다. 제 98 조 제 1 항에 의한 법률에는 제 3 항이 준용된다.

[제 75 조] 대강입법

[제 1 항] 연방은 제 72 조의 전제 아래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강규정(大綱規定)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제 74a 조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지방(支邦), 지방자치단체(支邦自治團體) 및 그 밖의 공법상의 사단(社團)에서의 공직근무에 있는 자들의 법률관계,

- 1a. 대학제도의 일반원칙,
2. 신문(新聞)의 일반적 법률관계,
3. 수렵(狩獵)제도, 자연보호 및 풍치(風致)조성,
4. 토지분배, 광역계획 및 물의 관리,
5. 신고(申告制度)제도 및 신분증명제도,
6. 독일 문화재의 외국반출(外國搬出)에 대한 보호.

제 72 조 제 3 항이 이에 준용된다.

[제 2 항] 대강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부적이거나 직접 효력을 가지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 3 항] 연방(聯邦)이 대강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방(支邦)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적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지방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제 76 조] 법률안

[제 1 항]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원들 또는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제 2 항]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사원에 이송(移送)되어야 한다.

연방참사원은 6 주 내에 이 안(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참사원이 중대한 이유로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 기간은 9 주가 된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에 송부(送付)할 때에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법률안을 그에 대한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이 없는 경우에라도 3 주 후에 또는 연방참사원이

제 3 문에 따른 요청을 표한 경우에는 6 주 후에 연방의회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이 있으면 접수 후 지체 없이 그것을

연방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기본법 개정(改正)과 제 23 조나 제 24 조에 따른

고권(高權)의 이양(移讓)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입장표명을 위한 이 기간은

9 주이다. 이 경우 제 4 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항] 연방참사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통하여 6 주 내에 연방의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 때에 연방정부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대한 이유로 특히 법률안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9 주가 된다.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예외적으로 특히 긴급하다고 표시한 경우에 이 기간은 3 주가 되거나 연방정부가 제 3 문에 따른 요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6 주로 된다. 기본법의 개정과 제 23 조나 제 24 조에 따른 고권의 이양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이 기간은 9 주이다. 이 경우 제 4 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의회는 법률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 77 조] 법률의 의결, 연방참사원의 참여권

[제 1 항]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된다. 연방법률은 채택 후 지체없이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연방참사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 2 항] 연방참사원은 의결된 법률안의 접수 후 3 주 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合同審議)를 위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되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議事規則)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은 지시(指示)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어떤 법률에 대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同意)가 필요할 때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제의하면 연방의회는 재(再)의결하여야 한다.

[제 2a 항]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한, 연방참사원은 제 2 항 제 1 문에 따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재절차가 법률안의 수정(修正)을 위한 제안 없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 3 항]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인 경우, 연방참사원은 제 2 항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에 대해 2 주 내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기간은 제 2 항 제 5 문의 경우 연방의회에 의한 재의결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되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제 2 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 위원회에서 절차가 완결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제 4 항] 전항(前項)의 이의가 연방참사원의 과반수 투표로 의결되면, 연방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의결로 그것을 기각(棄却)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이 최소한 그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로 이의를 의결할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그 기각은 최소한 연방의회의원의 재적과반수를 포함한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 78 조] 법률의 성립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은 연방참사원이 동의(同意)할 때, 제 77 조 제 2 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 제 77 조 제 3 항의 기한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를 철회(撤回)할 때 또는 이의가 연방의회에 의해 기각될 때에 성립한다.

[제 79 조] 기본법의 개정

[제 1 항] 기본법은 기본법의 문구(文句)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충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講和條約),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법적(占領法的) 법질서의 폐지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도움이 될 국제법적 조약에 있어서 기본법의 조항들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解明)하기 위해서는 이 해명에 국한되는 기본법의 문구의 보충으로써 충분하다.

[제 2 항] 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사원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 3 항] 연방을 각 지방(支邦)으로 분할편성하는 것, 입법에 있어서 지방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 1 조와 제 20 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80 조] 법규명령

[제 1 항]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委任)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법률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권한의 위임을 위해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제 2 항] 우편 및 전신시설의 이용에 관한 원칙과 요금, 연방철도시설이용료의 부과원칙 그리고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그리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고유사무(固有事務)로서 지방(支邦)에 의해 수행되는, 연방법률을 근거로 하는 법규명령은 연방법규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참사원의 동의(同意)를 필요로 한다.

[제 3 항]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에 자신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위한 법규명령안(法規命令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항] 연방법률에 의하여 또는 연방법률을 근거로 하여 지방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에서 지방(支邦)은 법률에 의한 규정권한도 있다.

[제 80a 조] 긴장사태

[제 1 항] 기본법이 또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이 본조(本條)에 따라서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위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가 긴장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장사태의 확인과 제 12a 조 제 5 항 제 1 문 및 제 6 항 제 2 문의 경우의 특별동의를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 2 항] 제 1 항에 따른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제되어야 한다.

[제 3 항] 이러한 법조항의 적용은 제 1 항에 상관없이 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맹조약(同盟條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의결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도 허용된다. 본항(本項)에 따른 조치는 연방의회가 재적과반수로 요구하는 때에는 해제되어야 한다.

[제 81 조] 입법긴급사태

[제 1 항] 제 68 조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긴급한 것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했을 때 연방정부의 제의(提議)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에 관한 입법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어떤 법률안을

제 68 조의 제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否決)된 때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제 2 항] 입법긴급사태의 선포 후 연방의회가 동(同) 법률안을 재차(再次) 부결하거나 동(同) 법률안을 연방정부가 수락(受諾)할 수 없는 법률로 통과시킬 때에는 동(同) 법률은 연방참사원이 동의하는 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법률안이 재의(再議)에 붙여진 후 4 주 내에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항] 연방수상의 임기 중 연방의회가 부결한 그 밖의 모든 법률안도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입법긴급사태의 최초의 선포 후 6 개월의 기간 내에 의결될 수 있다. 동(同) 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 중 재차(再次) 입법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4 항] 기본법은 제 2 항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 정지될 수도 없다.

[제 82 조] 서명, 공고, 법률의 발효

[제 1 항]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성립된 법률은 부서(副署)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聯邦法律公報)에 공고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제정하는 관청에 의하여 서명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제 2 항]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날의 경과 후 14 일째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제 83 조] 지방을 통한 연방법률의 집행

지방(支邦)은 기본법이 달리 규정을 두지 않거나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연방법률을 그 고유사무(固有事務)로서 집행한다.

[제 84 조] 연방감독 하의 지방행정

[제 1 항] 지방이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 지방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설치와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제 2 항]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 항] 연방정부는 지방이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맞게 집행하는가를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지방최고관청에 수임자(受任者)를 파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최고관청의 동의를 얻거나, 이 동의가 거절되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지방의 하급관청에도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 4 항] 지방에서의 연방법률의 집행(執行)에 관하여 연방정부가 확인한 결함이 제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나 지방의 제의로 지방이 법을 집행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참사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제 5 항] 연방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 개별적 지시(指示)를 할 권한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연방정부에게 부여될 수 있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지방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 85 조] 지방의 위임행정

[제 1 항] 지방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설치는 지방의 사항이다.

[제 2 항]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사무직원의 통일적 연수(研修)를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협의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제 3 항] 지방관청은 관할 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지시의 집행은 지방최고관청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제 4 항] 연방감독은 집행의 합법성(合法性)과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미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 86 조] 연방고유의 행정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 또는 연방직속(聯邦直屬)의 단체 또는 공법상의 시설을 통해 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을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를 정한다.

[제 87 조] 연방고유행정의 대상

[제 1 항] 외교업무, 연방재정행정과 제 89 조의 내용에 따른 연방수로(聯邦水路) 및 해운행정은 고유한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국경수비청, 경찰상의 정탐(偵探) 및 정보(情報)를 위한 중앙관청, 범죄수사경찰을 위한 중앙관청, 폭력행사나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에 의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에서의 제반(諸般) 기도(企圖)의 방지와 헌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수집을 위한 중앙관청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다.

[제 2 항] 관할범위가 한 지방(支邦)의 영역을 넘기는 사회보험주체는 연방직속(聯邦直屬)의 공법상의 사단이 된다. 참여하고 있는 지방들에 의하여 감독하는 지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범위가 한 지방(支邦)의 영역을 넘기는 하지만 세 지방을 넘지 않는 사회보험주체는 제 1 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속(支邦直屬)의 공법상의 사단으로서 운영된다.

[제 3 항] 그 밖에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는 사무를 위하여는 독립된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속단체 및 공법상의 시설들이 연방법률로 설치될 수 있다.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에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참사원과 연방의회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관청이 설치될 수 있다.

[제 87a 조] 군대의 편성과 투입

[제 1 항] 연방은 방위(防衛)를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조직의 대강(大綱)은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

[제 2 항] 방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기본법이 명문(明文)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제 3 항] 군대는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 그 방위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 민간인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서도 민간재산의 보호가 군대에 이양(移讓)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관할관청과 협력한다.

[제 4 항] 연방과 지방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협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 91 조 제 2 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간인·민간재산을 보호하며 또한 조직되고 군사적으로 무장(武裝)된 폭도(暴徒)들과 투쟁하는데 있어,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군대의 투입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 87b 조] 연방국방행정

[제 1 항] 연방국방행정은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국방행정은 군대의 인사(人事)와 그 물적 수요의 직접적인 총당의 과제에 기여한다. 상이군인(傷痍軍人)의 원호(援護)와 건축의 사무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만 연방국방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연방국방행정에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이 법률도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인사영역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2 항] 그 밖의 징병사무와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지방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지방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 85 조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와 관할 연방최고관청이 갖는 권한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상급관청에 이양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85 조 제 2 항 제 1 문에 의한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들 관청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될 수 있다.

[제 87c 조] 핵에너지

제 74 조 제 11a 호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지방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 87d 조] 항공교통행정

[제 1 항] 항공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공법상의 조직형태로 할 것인지 또는 사법상의 조직형태로 할 것인지는 연방법률로 결정한다.

[제 2 항]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항공교통행정과제가 위임행정으로서 지방에 이양(移讓)될 수 있다.

[제 87e 조] 철도

[제 1 항] 연방의 철도에 관한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철도교통행정의 임무는 고유사무로서 지방에 이양될 수 있다.

[제 2 항] 연방은 연방법률을 통하여 이양된, 연방의 철도영역을 넘어서는 철도교통행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항] 연방의 철도는 사법적(私法的) 형태의 경영기업(經營企業)으로서 운영된다. 이것은 경영기업의 활동이 궤도(軌道)의 건설·유지·운영을 포함하는 한,

연방의 재산에 속한다. 제 2 문에 따른 연방지분(聯邦持分)의 이 기업에 대한 양도(讓渡)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기업의 지분의 과반수는 연방에 속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4 항] 연방은 연방철도의 철도망의 건설 및 유지에 있어서와 그리고 이 철도망을 통한 철도교통의 개설에 있어서 이것이 근거리철도여객운송과 관계되지 않는 한, 공공의 복리, 특히 교통의 필요가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5 항]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를 근거로 한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 밖에 연방철도기업의 해산, 합병 및 분리와 연방철도의 궤도를 제 3 자에게 이양하는 것과 연방철도의 궤도사용중지를 규정하거나 또는 근거리철도여객운송에 영향을 주는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 87f 조] 우편제도와 통신

[제 1 항]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연방은 우편(郵便)과 전신(電信)의 영역에서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업무수행을 보장한다.

[제 2 항] 제 1 항의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은 독일연방우편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출연(出捐)된 기업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사적(私的) 희망자에 의하여 사경제(私經濟) 활동으로서 수행된다. 우편과 전신의 영역에서의 고권적(高權的) 임무는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제 3 항] 제 2 항 제 2 문과는 상관없이 연방은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영조물(營造物)의 법적 형태로 독일 연방 우편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출연된 기업과 관련한 임무를 연방법률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제 88 조] 연방은행, 유럽중앙은행

연방은 통화(通貨) 및 발권은행(發券銀行)을 연방은행으로서 설치한다. 이들 은행의 임무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며 물가안정의 보장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에 이양될 수 있다.

[제 89 조] 연방수로 행정

[제 1 항] 연방은 종래의 제국수로(帝國水路)의 소유자가 된다.

[제 2 항] 연방은 자신의 관청을 통해 연방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한 지방(支邦)의 영역을 넘어서는 내수운항의 국가적 과제와 법률로 연방에 이양(移讓)되는 해양운항의 과제를 수행한다. 연방은 한 지방의 영역 내에 위치하는 한, 연방수로의 행정을 위임행정으로서 신청에 따라 그 지방에 이양할 수 있다. 수로가 여러 지방에 걸쳐 있으면 연방은 관련지방들의 신청에 따라 지방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 항] 수로의 행정, 확장 또는 신설에 있어서 토지개량과 수리(水利)의 수요(需要)는 지방들과 협의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제 90 조] 연방도로

[제 1 항] 연방은 종래의 제국고속도로와 제국도로의 소유자가 된다.

[제 2 항] 지방 또는 지방법상 관할권을 가진 자치행정단체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 밖의 장거리교통을 위한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제 3 항] 연방은, 도로들이 그 지방의 영역 내에 있는 한, 지방의 신청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 밖의 장거리교통용 연방도로를 연방고유행정으로 맡을 수 있다.

[제 91 조] 국내긴급사태

[제 1 항] 연방 또는 지방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협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은 다른 지방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항] 위협에 처한 지방이 스스로 그 위협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이 지방의 경찰과 다른 지방의 경찰력을 자신의 지시 하에 둘 수 있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명령은 위협이 제거된 후,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위협이 한 지방 이상의 영역에 미칠 때 연방정부는 그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필요한 한 지방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 1 문과 제 2 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8a 장 공동과제 (공동과업)

[제 91a 조] 지방과제에 관한 연방의 협력권

[제 1 항] 지방의 과제가 전체를 위해 중대한 것이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해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임무)에는 연방은 다음의 분야에서 지방의 과제수행에 협력한다.

1.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의 확장과 신축,
2.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3. 농업구조와 연안보호(沿岸保護)의 개선.

[제 2 항] 공동과제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동(同) 법률에는 공동과제의 수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항] 동(同) 법률은 공동의 대강계획(大綱計劃)을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해 규정한다. 대강계획에 사업계획이 포함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이 실행될 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4 항] 연방은 제 1 항 제 1 호와 제 2 호의 경우 모든 지방에서 비용의 반(半)을 부담한다.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 연방은 최소한 반액을 부담한다. 지분은 모든 지방에 대해 동일적으로 확정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자금준비는 연방과 각 지방의 예산안의 확정에 유보된다.

[제 5 항] 연방정부와 연방참사원은 자신의 요구로 공동과제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 91b 조] 교육계획, 학술연구장려

연방과 지방은 협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과 초지역적(超地域的) 중대성을 띤 학술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촉진(促進)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제 9 장 사법 (司法)

[제 92 조] 사법권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권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 93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

[제 1 항]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연방최고기관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직무규칙에 의하여 고유의 권리를 갖는, 그 밖의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동기(動機)로 하는 기본권의 해석,
2. 연방정부, 지방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 기본법과 연방법 또는 기본법과 지방법과의 형식적·실질적 합치(合致)여부에 관한 또는 그 밖의 연방법과 지방법의 합치여부에 관한 의견대립(意見對立)이나 의문(疑問),
 - 2a. 연방참사원, 지방정부(支邦政府)나 지방(支邦)의 국민대표의 청구가 있을 때 법률이 제 72 조 제 2 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의견대립,
 3. 연방과 지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특히 지방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의 행사에 있어서의 의견대립,
 4.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 연방과 지방 간의, 지방상호 간의 또는 지방 내부에서의 그 밖의 공법상의 쟁의(爭議),
 - 4a. 누구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 또는 제 20 조 제 4 항, 제 33 조, 제 38 조, 제 101 조, 제 103 조 및 제 104 조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憲法訴願),
 - 4b. 제 28 조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지방헌법재판소에 소원(訴願)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5. 기타 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우.

[제 2 항] 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밖에 연방법률에 의해 그에게 배정(配定)된 사건에 관하여 활동한다.

[제 94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제 1 항]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관과 그 밖의 구성원으로 조직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의해 각각 반수(半數)씩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 그에 상응하는 지방의 기관에 소속될 수 없다.

[제 2 항] 연방법률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그 판결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를 규정한다. 연방헌법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권리구제절차를 사전에 모두 경유할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수리절차(受理節次)를 규정할 수 있다.

[제 95 조] 연방법원

[제 1 항] 연방은 일반, 행정, 재정, 노동재판 및 사회재판의 영역에 최고법원으로서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제 2 항] 이러한 각 법원의 법관의 임명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연방장관이 각각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지방장관들과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同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3 항] 판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 1 항에 열거된 법원의 합동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96 조] 기타의 연방법원

[제 1 항] 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안(事案)을 다루는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 항] 연방은 군대를 위한 군형사법원을 연방법원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 군형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한다. 그 전임법관(專任法官)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 3 항] 제 1 항과 제 2 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상급법원은 연방최고법원이다.

[제 4 항] 연방은 연방에 대해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懲戒節次)와 소원절차(訴願節次)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5 항] 다음 영역에서의 형사절차를 위하여 연방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지방법원이 연방의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1. 인종학살,
2. 인간성에 반하는 국제법적 범죄,
3. 전쟁범죄,
4.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攪亂)시키기에 적합하고 교란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 (제 26 조 제 1 항),
5. 국가의 보호.

[제 97 조] 법관의 독립

[제 1 항] 법관은 독립이며 법률에만 따른다.

[제 2 항] 전임(專任)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終局的)으로 임용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전에 면직(免職)되거나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停職)되거나 전보(轉補) 혹은 퇴직될 수 있다. 입법은 정년(停年)을 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관(終身法官)을 퇴직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관은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 98 조] 법관의 법적 지위

[제 1 항]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제 2 항]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지방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청구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轉職)이나 퇴직(退職)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인 경우에는 파면(罷免)시킬 수 있다.

[제 3 항] 지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지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 74a 조 제 4 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은 대강규정(大綱規定)을 정할 수 있다.

[제 4 항] 지방은 지방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법관의 임명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5 항] 지방은 지방법관에 관하여 제 2 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 지방헌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제 99 조] 지방법률에 의한 연방의 재판관할

지방법률에 의한 지방 내부에서의 헌법쟁송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배정(配定)될 수 있고, 지방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심(最終審) 판결은 제 95 조 제 1 항에 열거된 최고법원에 배정(配定)될 수 있다.

[제 100 조] 규범통제

[제 1 항] 법원이 재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되는 법률을 위헌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또 지방헌법(支邦憲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지방의 헌법쟁송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고,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이는 지방법에 의한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되거나 연방법률과 지방법률의 불합치성(不合致性)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2 항] 어떤 소송에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지(제 25 조)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제 3 항] 지방의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시에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다른 지방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동(同)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제 101 조] 특별법원

[제 1 항]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특별사항분야를 위한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제 102 조] 사형

사형은 폐지된다.

[제 103 조] 법적 진술권, 가벌성

[제 1 항] 누구든지 법정에서 법적 진술권을 가진다.

[제 2 항] 어떤 행위든 그것이 행해지기 이전(以前)에 그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

[제 3 항] 누구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근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 104 조] 자유제한과 자유박탈

[제 1 항] 신체의 자유는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虐待)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항]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은 법관만이 결정한다. 법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박탈은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절대적 권력으로 누구도 체포의일(逮捕翌日)이 종료한 후까지 구금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 3 항] 범죄행위의 혐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누구든지 늦어도 체포의일에 법관에게 인치(引致)되어야 하며, 법관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려야 하며 그를 신문(訊問)해야 하고 그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添附)한 체포영장을 발부(發付)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 4 항] 자유발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대한 법관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피구금자(被拘禁者) 가족 또는 그가 신임(信任)하는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10 장 재정제도 (금융제도)

[제 104a 조] 비용분담, 재정지원, 책임

[제 1 항] 연방과 지방은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과제수행에서 나오는 비용을 따로 부담한다.

[제 2 항] 지방이 연방의 위임을 받아 행동할 때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제 3 항] 금전급부(金錢給付)를 내용으로 하고 지방에 의하여 집행되는 연방법률은 금전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동(同) 법률이 비용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할 경우 그 법률은 연방의 위임을 받아 집행된다. 동(同) 법률이 비용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지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경우 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4 항] 연방은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攪亂)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영역에서의 상이(相異)한 경제력의 조정(調整)을 위해 또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방(支邦)과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의 특별히 중요한 투자를 위해 각 지방에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상세한 것, 특히 촉진될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이나 연방예산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제 5 항] 연방과 지방은 그 관청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있는 행정을 책임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105 조] 입법권

[제 1 항] 연방은 관세(關稅)와 재정전매(財政專賣)에 관한 전속적(專屬的) 입법권을 가진다.

[제 2 항] 연방은, 그 밖의 조세수입(租稅收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에 귀속하든가 제 72 조 제 2 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밖의 조세에 관한 경쟁적(競爭的) 입법권을 가진다.

[제 2a 항] 지방은 연방법률로 규정되는 조세와 동일한 것이 아닌 한, 지역적인 소비세(消費稅)와 사치세(奢侈稅)에 관한 입법권을 가진다.

[제 3 항]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이 귀속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106 조] 수익고권, 재정배정

[제 1 항] 재정전매수입과 다음의 조세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제 2 항에 따라 지방에 귀속되거나 제 3 항에 따라 연방과 지방에 공동으로 귀속하거나 제 6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아닌 소비세,
3. 도로운송세,
4. 자본거래세, 보험세 및 어음세,
5. 1 회에 한한 재산세 및 부담의 조정을 위한 조정세,
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7. 유럽공동체 범위 내에서 과하는 공과(公課).

[제 2 항] 다음의 조세수입은 지방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제 1 항에 따라 연방에 귀속되거나 제 3 항에 따라 연방과 지방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닌 거래세(去來稅),
5. 맥주세(麥酒稅),
6. 도박장의 공과(公課).

[제 3 항] 제 5 항에 따라 소득세의 수입이, 그리고 제 5a 항에 따라 판매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소득세·법인세 및 판매세는 연방과 지방에 공동으로 귀속(공동조세)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연방과 지방이 각각 반분(半分)한다. 판매세에 관한 연방과 지방의 몫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확정된다. 이 몫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연방과 지방은 통상수입(通商收入)의 범위 내에서 각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동등한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수년(數年)에 걸친 재정계획을 참작해서 정한다.
2. 연방과 지방의 충당요구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고 연방영역에서의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세에 관한 연방과 지방의 몫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에게 1996년 1월부터 수입세에서 자녀들을 고려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수입감소가 추가적으로 산입된다. 상세한 것은 제 3 문에 따라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4 항] 판매세에 대한 연방과 지방의 몫은, 연방과 지방의 수입·지출의 비율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로 정해져야 한다. 제 3 항 제 5 문에 따라 판매세의 몫의 확정에 추가적으로 산입된 조세수입감소는 여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지방에 추가지출을 과하거나 수입을 삭감할 경우, 그 보조가 단기간에 한한다면, 그 가중부담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또한 연방의 재정보조할당금으로도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보조할당금의 산정과 지방에의 분배에 관한 원칙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제 5 항]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이 주민의 소득세납부를 근거로 한 소득세의 수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할 몫을 받는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同)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몫에 관한 징수율(徵收率)을 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 5a 항]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 1월 1일부터 판매세 수입의 한 몫을 갖는다. 그 몫은 지방에 의해 지역적 및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6 항] 토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지역적 소비세(消費稅) 및 사치세(奢侈稅)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세와 영업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한이 부여된다. 어떤 지방에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때에는 수입과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지방에 귀속한다. 연방과 지방은 할당비율에 따라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할당비율에 관해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지방입법에 따라 토지세와 영업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수입 몫이 할당비율의 산정근거(算定根據)가 될 수 있다.

[제 7 항] 공동조세(共同租稅)의 수입전체에 대한 각 지방의 몫 중에서 지방입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일정비율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총체적으로 배정된다. 그 밖에 지방입법은 지방세의 수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배정될 것인가를 정한다.

[제 8 항] 연방이 지방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에게 동(同) 지방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가중지출이나 수입감소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시설을 하게 할 경우(특별부담), 연방은 한 지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부담을 하리라고 기대될 수 없을 때 필요한 조정(調整)을 한다. 제 3 자의 보상급부(補償給付)와 동(同) 지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은 조정에 있어서 참작된다.

[제 9 항]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도 본조(本條)에서 말하는 지방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된다.

[제 106a 조] 근거리여객운송을 위한 지방지분

1996 년 1 월 1 일부터 공공의 근거리 여객운송을 위하여 연방의 조세수입으로부터 일정액이 지방에 지급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1 문에 따른 가액은 제 197 조 제 2 항에 따른 재정력(財政力)의 산정(算定)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제 107 조] 지역적 수입, 지방재정의 조정, 추가배정

[제 1 항] 지방세수입과 소득세·법인세수입에 대한 지방의 몫은, 그 세(稅)가 지방영역 내의 재정관청에 의해 징수(지역적 수입)되는 때에는, 각 지방에 귀속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한 지역적 수입의 한계와 종류 및 그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同) 법률은 그 밖의 지역적 세수입(稅收入)의 한계와 배분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판매세수입에 관한 지방의 몫은 주민수(住民數)에 비례하여 각 지방에 귀속된다. 이 지방몫의 일부, 그러나 최고 4분의 1 한도 내에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지방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의 주민당(住民當) 수입이 지방의 평균 이하인 지방에 대한 추가몫이 규정될 수 있다.

[제 2 항] 각 지방의 상이(相異)한 재정력의 적절한 조정(調整)이 법률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의 조정청구권과 조정에 응해야 할 지방의 조정의무에 관한 요건과 조정급부액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동(同) 법률에 의하여, 연방이 급부능력이 약한 지방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시켜 주기 위해 연방의 재원으로부터 교부금(交付金)을 지급한다(보조금할당)는 것도 규정될 수 있다.

[제 108 조] 재무행정, 재정재판

[제 1 항] 관세, 재정전매 그리고 수입판매세를 포함한 연방법률상의 소비세와 유럽공동체의 범위 내에서 과하는 공과(公課)는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중급관청(中級官廳)이 설치된 경우, 그 중급관청의 장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된다.

[제 2 항] 그 밖의 조세는 지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과 공무원들의 통일적 연수(研修)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中級官廳)이 설치된 경우, 그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양해(諒解)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제 3 항] 지방재정관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되는 조세를 관리할 때에는 연방의 위임(委任)에 따라 활동한다. 제 85 조 제 3 항과 제 4 항은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신하는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제 4 항] 조세행정에 있어서 조세법의 집행이 현저히 개선되거나 수월해질 때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연방재정관청과 지방재정관청의 협력이 규정될 수 있고, 제 1 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관해서는 지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管理)가, 그 밖의 조세에 관해서는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규정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조세에 관해서는 지방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에 의한 관리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이양(移讓)될 수 있다.

[제 5 항] 연방재정관청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지방재정관청과 제 4 항 제 2 문의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 6 항] 재정재판(財政裁判)은 연방법률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 7 항]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조세행정이 지방재정관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일 때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9 조] 연방과 지방의 예산운용

[제 1 항] 연방과 지방은 각자의 예산운용에 있어 자주적이고 상호독립적이다.

[제 2 항] 연방과 지방은 그 예산운용에 있어 경제전체의 균형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제 3 항] 예산법과 경기(景氣)에 상응한 예산운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에 관하여 연방과 지방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제시할 수 있다.

[제 4 항]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攪亂)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1. 영역단체(領域團體)와 목적단체(目的團體)에 의한 신용차금(信用借金)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그리고
2. 독일연방은행에서의 무이자예금(無利子豫金)을 유지할 연방과 지방의 의무(경기조정준비예치금)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정부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그 법규명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110 조] 예산안

[제 1 항]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기업체와 특별재산에 관해서는 전출금(轉出金) 또는 전입금(轉入金)만을 포함시키면 된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 2 항] 예산안은 일(一)회계년도 또는 다(多)회계년도에 있어서 연도별로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된다. 예산안의 각 부분에 관해 기한이 상이(相異)한 것은 회계년도별로 분리되어 적용되는 것이 규정될 수 있다.

[제 3 항] 제 2 항 제 1 문에 의한 법률안과, 예산법률 및 예산안의 변경에 관한 제안(提案)은 연방참사원에 이송함과 동시에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사원은 6주 내에, 수정제안(修正提案)의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제안에 관해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

[제 4 항] 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지출과 예산법률에 의해 의결된 기한에 관한 조항만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은, 그 법조항이 차기(次期) 예산법률의 공포와 더불어 비로소 또는 제 115 조에 의한 수권(授權)의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 111 조] 긴급예산

[제 1 항] 회계년도의 종료시까지 차년도(次年度)의 예산안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하면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시행시까지

- a) 법률로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로 의결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 b) 법적 근거가 있는 연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c) 전년도(前年度)의 예산안에 의해 그 액수가 이미 승인된 경우의 건축, 조달(調達) 및 그 밖의 급부(給付)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 목적을 위한 원조(援助)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할 권한을 갖는다.

[제 2 항] 특별법에 근거를 갖는 조세(租稅), 공과(公課) 및 그 밖의 재원 또는 사업용 적립금(積立金)으로부터의 수입이 제 1 항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그 경제운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 예산안의 최종총액 4분의 1의 금액까지 차입(借入)하여 융통(融通)할 수 있다.

[제 112 조] 예산초과

예산초과지출과 예산 외의 지출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동의는 오직 예견(預見)할 수 없었던, 그리고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 113 조] 지출을 증액하고 수입을 감소하는 법률

[제 1 항] 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상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장차 새로운 지출을 초래할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차 수입감소를 초래할 법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의 의결을 연기(延期)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6주 내에 연방의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제 2 항]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동(同) 법률을 의결한 후 4주 내에 연방의회가 재(再)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 항] 법률이 제 78조에 따라 성립되면 연방정부는, 6주 내에 한해서만 그리고 연방정부가 제 1 항 제 3 문과 제 4 문이나 제 2 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했을 때에만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4 조] 회계검사, 책임면제

[제 1 항] 연방재무장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 그리고 과년도(過年度)의 자산과 채무에 관해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하여 차(次)회계년도 중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2 항] 그 구성원이 법관과 같은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검사원은 결산과 더불어 예산집행 및 경제운용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회계검사원은 매년

연방정부 외의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 연방회계검사원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115 조] 신용차금, 보증인수

[제 1 항] 장래의 회계년도에 있어서 지출될 수 있는 신용차금(信用借金), 담보제공 또는 그 밖의 보증들은 그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연방법률에 의한 수권(授權)을 필요로 한다. 신용차금으로부터의 수입은 예산안 중에 계상(計上)된 투자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攪亂)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2 항] 연방의 특별재산에 관해서는 연방법률로 제 1 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제 10a 장 방위사태

[제 115a 조] 방위사태, 확인

[제 1 항]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영역이 무력(武力)으로 공격받거나 이러한 공격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다(방위사태)는 확인을 한다. 이 확인은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면 적어도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포함하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 2 항] 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障礙)때문에 연방의회의 적시(適時)의 집회가 어렵거나 연방의회의 결불능인 때에는, 공동위원회가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포함하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로써 확인을 한다.

[제 3 항] 이 확인은 제 82 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포(公布)된다. 이것을 적시(適時)에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포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추록(追錄)해야 한다.

[제 4 항]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고 해당 연방기관이 즉각 제 1 항 제 1 문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확인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공격이 개시된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이 시점을 공포해야 한다.

[제 5 항] 방위사태의 확인이 공포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게 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을 할 수 있다. 제 2 항의 전제 하에서는 공동위원회가 연방의회를 대신한다.

[제 115b 조] 명령권의 이관

방위사태의 공포와 더불어 군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은 연방수상에게 이관(移管)된다.

[제 115c 조]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제도

[제 1 항] 연방은 방위사태를 위하여 지방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분야에 대해서도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2 항] 방위사태기간 중 상황이 요구하면, 방위사태에 있어서 연방법률로

1. 공용수용(公用收用)의 경우 제 14 조 제 3 항 제 2 문과는 다른 보상(補償)이 잠정적(暫定的)으로 규정될 수 있고,
2. 법관이 정상시(正常時)에 적용되는 기한 내에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자유박탈에 있어서 제 104 조 제 2 항 제 3 문과 제 3 항 제 1 문과는 달리 기한을 정할 수 있으나 최고 4 일을 넘을 수 없다.

[제 3 항] 현재의 또는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는 공격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태에 있어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연방과 지방의 행정 및 재정제도가 제 8 장, 제 8a 장, 제 10 장과는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방·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존속능력(存續能力),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의 존속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제 4 항] 제 1 항과 제 2 항 제 1 호에 의한 연방법률은 그 집행준비를 위하여 방위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적용될 수 있다.

[제 115d 조] 방위사태에서의 입법절차

[제 1 항] 방위사태의 경우에는 연방의 입법에 관해 제 76 조 제 2 항, 제 77 조 제 1 항 제 2 문과 제 2~4 항, 제 78 조 및 제 82 조 제 1 항과는 달리 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 항] 긴급한 것으로 표시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사원에 이송(移送)된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이 법률안을 지체없이 공동으로 심의(審議)한다. 이 법률에 대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하면, 법률의 성립을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표(票)의 과반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3 항] 법률의 공포에는 제 115a 조 제 3 항 제 2 문이 준용된다.

[제 115e 조]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대체

[제 1 항] 방위사태의 경우에 공동위원회가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포함하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로 연방의회의 적시(適時)의 집회를 방해하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障礙)가 있다는 것을 또는 연방의회의 의결불능을 확인하면, 공동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제 2 항] 기본법은 공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도 없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없다. 공동위원회는 제 23 조 제 1 항 제 2 문, 제 24 조 제 1 항 또는 제 29 조에 따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제 115f 조] 연방정부의 권한확장

[제 1 항] 방위사태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상황이 요구하는 한,

1. 연방국경수비대를 연방전역(聯邦全域)에 투입할 수 있고,
2. 연방행정청 외에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관청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고, 또 이 권한을 그가 정하는 지방정부의 구성원에게 이양(移讓)할 수 있다.

[제 2 항]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및 공동위원회는 제 1 항에 의하여 행해진 조치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받는다.

[제 115g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기능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판사들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상 임무의 수행은 침해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해서도 동(同) 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공동위원회의 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동(同) 재판소의 활동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제 2 문과 제 3 문에 의한 결정을 재석(在席)판사의 과반수로 행한다.

[제 115h 조] 연장된 의회기와 임기

[제 1 항]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의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회기(議會期)는 방위사태의 종료 6 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전의 직위종료로 인한 연방참사원 의장에 의한 대통령권한의

대행(代行)은 방위사태종료 9 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임기는 방위사태종료 6 개월 후에 끝난다.

[제 2 항] 공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출이 필요할 경우 동(同)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공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구성원 3분의 2 의 다수로 후임자(後任者)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수상에 대해 불신임(不信任)을 표명할 수 있다.

[제 3 항] 방위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연방의회의 해산은 금지된다.

[제 115i 조] 지방정부의 특별권한

[제 1 항] 소관 연방기관이 위협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상황이 연방의 각 영역에서 즉각적·독자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때에는, 지방정부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관청이나 수임자(受任者)가 그 권한 내에서 제 115f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항] 제 1 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관청과 연방하급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방수상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

[제 115k 조] 규범의 효력

[제 1 항] 제 115c 조, 제 115e 조 및 제 115g 조에 의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그 적용기간 중 그것들에 저촉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 115c 조, 제 115e 조 및 제 115g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법(舊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항] 공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늦어도 방위사태종료 6 개월 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항] 제 91a 조, 제 91b 조, 제 104a 조, 제 106 조 및 제 107 조와 상이(相異)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길어도 방위사태종료 후의 두번째 회계년도말까지 적용된다. 동(同) 법률은 방위사태종료 후 제 8a 장과 제 10 장에 적합한 규정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제 1151 조] 공동위원회의 법률의 폐지, 방위사태의 종료

[제 1 항]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공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협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공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그 밖의 조치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의결이 있으면 해제되어야 한다.

[제 2 항] 연방의회는 언제라도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의결로써 방위사태가 종료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확인에 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방위사태는 지체없이 종료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제 3 항] 강화조약(講和條約)은 연방법률로 결정된다.

제 11 장 경과규정 (經過規定) 및 종결규정 (終結規定)

[제 116 조] 독일국적

[제 1 항]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 영역 내의 독일혈통을 가진 난민(難民), 피추방자(被追放者) 또는 그 배우자(配偶者)나 비속(卑屬)으로 받아들여진 자이다.

[제 2 항] 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정치적·종족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구(舊)독일국적 보유자와 그 비속은 신청에 따라 다시 귀화(歸化)된다.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 내에 주소를 갖고 있었던 이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 117 조] 제 3 조 제 2 항 및 제 11 조에 관한 경과규정

[제 1 항] 제 3 조 제 2 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이 이 기본법 규정에 적용하기까지 효력을 가지나, 1953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2 항] 현재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 118 조] 남서독일영역의 재구성

바덴, 뷔텐베르크-바덴 및 뷔텐베르크-호엔졸러른 지방을 포함하는 영역에서의 재편성은 제 29 조의 규정과는 달리 관계지방의 협정으로 행해질 수 있다. 협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편성은 국민문의를 규정해야 하는 연방법률로 규정된다.

[제 118a 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재편성

베를린지방과 브란덴부르크를 포함하는 영역의 재편성은 제 29 조의 규정과는 달리 그 유권자의 참여 하에 두 지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19 조] 난민과 피추방자

난민과 피추방자에 대한 업무 특히 그들을 각 지방에 할당(割當)하기 위한 업무에 관해서는 연방정부가 연방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을 때까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언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에게 개별적 지시(指示)를 할 권한이 위임(委任)될 수 있다. 지시는 지체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진다.

[제 120 조] 전쟁결과부담의 분담

[제 1 항] 연방은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라 점령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經費)와 그 밖의 내외전쟁결과부담을 진다. 이 전쟁결과부담이 1969년 10월 1일까지 연방법률로 정해지는 경우 연방과 지방은 그러한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경비를 양자(兩者)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결과부담에 소요되는 경비가 1965년 10월 1일까지 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수행하는 그 밖의 과제담당자에 의해 지출된 이상, 연방은 이 시기 이후에는 이같은 경비를 인수(引受)할 의무가 없다. 지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포함한 사회보험부담을 위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본항(本項)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부채를 연방과 지방에 할당(割當)하는 것은 전쟁결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제 2 항] 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引受)한 때에 연방에 이전(移轉)한다.

[제 120a 조] 부담조정의 실시

[제 1 항] 부담조정을 위한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동(同) 법률이 조정작업의 영역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해 일부는 연방의 위임(委任)으로 지방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우 제 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관계연방최고관청에 귀속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조정청에 이관(移管)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지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지방최고관청(지방조정청)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제 2 항] 제 87조 제 3항 제 2문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 121 조] 다수 개념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연방의회와 연방의회의 구성원의 다수란 그 법적 구성원의 다수를 말한다.

[제 122 조] 지금까지의 입법권한의 폐지

[제 1 항] 연방의회의 집회 후부터는 법률은 오로지 이 기본법에서 인정된 입법권에 의해서만 의결된다.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그 관할권이 소멸되는 입법기관과 입법심의협력기관은 이 시점부터 해산(解散)된다.

[제 123 조] 구법의 효력 존속

[제 1 항] 연방의회의 집회 이전부터 있던 법은, 그것이 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2 항] 이 기본법상 지방입법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는 것으로서 독일제국(獨逸帝國)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관계자의 모든 권리와 이의(異義)의 유보(留保) 하에 계속 효력을 가지나, 이 기본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기관에 의해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거나 그 조약 중에 포함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종결이 따로 이루어질 때까지만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 124 조] 전속적 입법대상의 연방법으로서의 효력 존속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되는 법은 그 적용 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 125 조] 경합적 입법대상의 연방법으로서의 효력 존속

연방의 경합적 입법권의 대상에 해당되는 법은 다음의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1. 그것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점령 지역 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2. 그것이 1945년 5월 8일 이후의 구(舊)제국법을 개정한 법에 관한 것인 경우.

[제 125a 조] 1994 년 11 월 15 일 이전에 공포된 연방법의 효력 존속

[제 1 항] 연방법으로서 제정되었지만 제 74 조 제 1 항이나 제 75 조 제 1 항의 개정을 이유로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 제정될 수 없는 법은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는 지방법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제 2 항] 제 72 조 제 2 항을 근거로 1994 년 11 월 15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서 제정된 법은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이것이 지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규정될 수 있다. 이 시점 이전에 제정되었고 제 75 조 제 2 항에 따라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는 연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제 126 조] 효력 존속에 관한 의견의 대립

법이 연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 127 조]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에 관한 법

연방정부는 관계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에 관한 법률, 그것이 제 124 조 또는 제 125 조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한, 이 기본법의 공포 후 1 년 이내에 바덴, 대(大)-베를린, 라인란트팔츠 및 뷔텐베르크-호엔졸러른 지방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 128 조] 지시권의 존속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 84 조 제 5 항에서 말하는 지시권(指示權)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시권은 다른 법률적 규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 129 조]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권의 효력 존속

[제 1 항]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 중에 법규명령이나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권과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경우 그 수권은 이제부터 실제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이행된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 2 항] 지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 중에 그러한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경우, 그 수권은 지방법상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제 3 항] 제 1 항과 제 2 항에서 말하는 법규가 그 법규의 개정이나 보충을 위한 권한 또는 법률을 대신하는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위임(委任)하고 있는 경우, 이 권한위임은 소멸된다.

[제 4 항] 법규(法規) 중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규정되고 있는 때에는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130 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이전

[제 1 항] 지방법이나 지방 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행정기관과 그 밖의 공행정이나 사법(司法)을 위한 제도 그리고 서남(西南)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와 프랑크 점령지역에서의 우편·통신에 관한 행정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그 이관(移管), 해산(解散) 또는 청산(清算)을 규정한다.

[제 2 항] 이런 관리체(管理體)와 제도들에 소속되는 사람들의 복무상 최고관청은 소관 연방장관이다.

[제 3 항] 지방직속이 아닌 그리고 지방 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사단(社團)과 영조물(營造物)은 관할 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 131 조] 공직의 법적 관계

난민(難民)과 피추방자(被追放者)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퇴직하여 이제까지 임용되지 않았든가 그들의 이전(以前)의 지위에 상응(相應)하게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법률관계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난민과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연금(年金)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전혀 또는 적당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상응하여 준용된다. 지방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의 시행시까지 법적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

[제 132 조] 공직 근무자

[제 1 항] 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종신직(終身職)으로 임명되었던 공무원과 법관은 그들이 그들의 직(職)을 위한 인적(人的) 또는 전문적(專門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로부터 6 개월 내에 퇴직, 대기(待機) 또는 낮은 봉급의 직(職)에 전직(轉職)될 수 있다. 통지(通知)에 의해 해직될 수 없는 사무직원의 경우 임금법상의 규정이 준용된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있는 사무직원의 경우 임금법상의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지기간은 위와 동일한 기한 내에도 상쇄될 수 있다.

[제 2 항] 전항(前項)의 규정은, 그 중대한 이유가 개인에게 있지 않는 한,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軍國主義)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가사회주의의 박해(迫害)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공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항] 전항(前項)의 해당자에게는 제 19 조 제 4 항에 따라 제소(提訴)의 길이 열려 있다.

[제 4 항]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규정한다.

[제 133 조] 통합경제지역의 권리승계

연방은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 134 조] 제국재산의 인수

[제 1 항] 제국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이 된다.

[제 2 항] 제국재산은 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연방의 행정과제가 아닌 행정과제를 위하여 주로 사용될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면 이제부터 관할권을 갖는 과제의 담당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이전(移轉)되며, 또 일시적(一時的)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현재 지방이 수행해야 할 행정과제에 봉사하는 것이면 지방에 이전된다. 연방은 그 밖의 재산도 지방에 이전할 수 있다.

[제 3 항]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가 무상으로 제국의 처분에 맡겼던 재산은, 연방이 그것을 고유의 행정과제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다시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재산이 된다.

[제 4 항]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135 조] 지역변경이나 소멸시의 재산이전

[제 1 항] 1945 년 5 월 8 일 이후 이 기본법 발효시까지 어떤 지역의 지방(支邦)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지역이 당시 소속하고 있던 지방(支邦)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소속하는 지방(支邦)에 귀속된다.

[제 2 항] 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주로 행정과제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되었든가, 또는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주로 행정과제에 봉사하고 있는 것인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방과 그 밖의 공법상의 사단(社團) 및 영조물(營造物)의 재산은 현재 위의 과제를 수행하는 지방 또는 공법상의 사단이나 영조물에 이전된다.

[제 3 항]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방의 재산중물(財産從物)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그것이 제 1 항에서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소재지(財産所在地)인 지방에 이전된다.

[제 4 항] 연방의 중대한 이익이나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 1 항에서 제 3 항까지와는 다른 규정이 연방법률로 규정될 수 있다.

[제 5 항] 그 밖에 권리승계와 청산(清算)은, 1952 년 1 월 1 일까지 관계지방 또는 공법상의 사단이나 영조물 등의 협정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6 항] 사법상(私法上)의 기업에 대한 구(舊)프로이센지방의 출자(出資)는 연방에 이전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하며 이 법률은 예외도 규정할 수 있다.

[제 7 항] 제 1 항에서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라 지방 또는 공법상의 단체나 공공시설에 귀속하게 될 재산에 관하여 그것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지방법률에 의하여, 지방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자가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5a 조] 채무의 이행

[제 1 항] 제 134 조 제 4 항과 제 135 조 제 5 항에서 유보된 연방의 입법에 의하여

1. 제국의 의무와 더불어 구(舊) 프로이센지방과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공법상의 사단 및 영조물의 의무,
2. 제 89 조, 제 90 조, 제 134 조 및 제 135 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의 이전(移轉)과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그 밖의 공법상의 사단과 영조물의 의무 그리고 제 1 호에 규정된 권리주체의 처분에 근거를 가지는 의무,
3. 동(同) 권리주체가 1945 년 8 월 1 일 이전에 점령당국(占領當國)의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제국에 의해 이관(移管)된 행정과제의 테두리 안에서 전쟁상황에 의해 야기된 긴급사태의 배제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무

를 전혀 또는 완전한 정도로 이행할 수 없음을 또한 규정할 수 있다.

[제 2 항] 제 1 항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나 그 법주체(法主體)의 의무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재산가치의 연방,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과 관계되는 연방 또는 다른 공법상의 사단과 영조물의 의무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나 그 법주체의 조치에 기하고 있는 의무에 적용된다.

[제 136 조] 연방참사원의 최초의 집회

[제 1 항]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일에 처음으로 집회한다.

[제 2 항] 최초의 연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참사원 의장에 의해 행사된다. 연방의회의 해산권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 137 조] 공무원의 피선거격의 제한

[제 1 항] 연방,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직근무사무직원, 직업군인, 일시지원병(一時志願兵) 그리고 법관의 피선거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제 2 항] 연방공화국의 초대(初代) 연방의회, 초대 연방회의 및 초대 연방대통령의 선거에 관해서는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되는 선거법이 적용된다.

[제 3 항] 제 41 조 제 2 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되는 권한은 그것이 설치되기까지 통합경제지역을 위한 독일상급법원이 행사하며 독일상급법원은 그 절차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제 138 조] 공증인 제도의 변경

바덴, 바이에른, 뷔텐베르크-바덴 및 뷔텐베르크-호엔촐러른 지방의 현재 공증인제도의 변경은 이들 지방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제 139 조] 해방법들의 효력 존속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軍國主義)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解放)’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는다.

[제 140 조]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의 국가교회법적 규정의 적용⁵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 제 136 조, 제 137 조, 제 138 조, 제 139 조 및 제 141 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제 141 조] 종교수업 (브레멘 조항)

제 7 조 제 3 항 제 1 문은 1949년 1월 1일에 별단의 지방법의 규정이 있는 지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⁵ 1919년 8월 11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 136 조 내지 제 139 조 및 제 141 조는 다음과 같다.

[제 136 조]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

[제 1 항] 시민적 그리고 국민적 권리와 의무는 종교적 자유의 행사에 의하여 조건지워질 수도 없고 그것을 이유로 제한될 수도 없다.

[제 2 항] 시민적·국민적 권리의 향유와 공직취임에의 허용은 종교적 고백과 무관하다.

[제 3 항] 어느 누구도 종교적 확신을 밝힐 의무를 지지 않는다. 관청은 권리·의무가 종교단체에의 소속에 의존하거나 법률상 규정된 통계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종교단체에의 소속여부를 물어볼 권리를 가진다.

[제 4 항] 어느 누구도 교회의 예배나 의식, 종교적 행사에의 참여 또는 종교적 선서방식의 이용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137 조] 종교단체

[제 1 항] 국가적 교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종교단체결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공화국영역 내에서의 종교단체의 결성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항] 모든 종교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한계 내에서 독자적으로 그 사무를 규율하고 관리한다. 모든 종교단체는 국가나 시민단체의 협력없이 그 성직을 부여한다.

[제 4 항] 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조항에 따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제 5 항] 지금까지 공법상의 사단(社團)이었던 종교단체는 계속 공법상의 사단으로 남는다. 그 밖의 종교단체는, 그 조직과 구성원수에 따라 영속(永續)을 보증할 때에는 그 신청으로 공법상의 사단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끝으로 복수(複數)의 공법상의 종교단체가 연합체를 조직할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상의 사단이 된다.

[제 6 항] 공법상의 사단인 종교단체는 지방법상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징세명부(徵稅名簿)를 근거로 하여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항] 세계관의 공동체적 보호를 임무로 하는 결사(結社)는 종교단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 8 항] 위 규정들을 집행하기 위해 그 밖의 규정이 필요할 경우에 이는 지방입법에 맡겨진다.

[제 138 조] 종교단체의 재산

[제 1 항] 법률, 계약 또는 특별한 권원(權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급부(給付)는 지방입법으로 폐지된다. 이에 관한 원칙은 공화국이 정한다.

[제 2 항] 종교단체와 종교적 결사가 그 의식, 교육 및 자선목적에 위한 시설, 재단(財團)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는 보장된다.

[제 139 조] 일요일과 공휴일의 보호

일요일과 국경일은 일을 쉬는 날과 정신고양(精神高陽)의 날로서 법률로 보호된다.

[제 141 조] 시설의 사제직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에서 예배와 사제직(司祭職)을 필요로 할 때에는,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 때 강제는 배제되어야 한다.

[제 142 조] 지방헌법에서의 기본권

제 3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헌법의 규정은, 그것이 이 기본법 제 1 조에서 제 18 조까지의 조항과 일치하여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한, 역시 효력을 가진다.

[제 143 조] 입회조건부 경과규정

[제 1 항] 통일조약과 제 3 조에 열거된 지역의 법은 상이(相異)한 여건 때문에 기본법적 질서에의 완전한 적응이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한에서 그리고 그러한 동안은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본법의 규정과 불합치(不合致)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치는 제 19 조 제 2 항에 반해서는 안되며 제 79 조 제 3 항에 열거된 원칙들과 합치해야 한다.

[제 2 항] 제 2, 8, 8a, 9, 10, 11 장과의 불합치는 늦어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제 3 항] 제 1 항과 제 2 항과는 무관하게 통일조약 제 41 조와 그 시행을 위한 규정들은 이 조약 제 3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역상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더 이상 원상회복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제 143a 조] 연방철도의 전환

[제 1 항] 연방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된 연방철도를 경영기업(經營企業)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속적(專屬的)인 입법권한을 갖는다. 제 87e 조 제 5 항은 준용된다. 연방철도의 공무원은 법률에 의하여 그 법적 지위와 사법적(私法的)으로 조직된 연방철도의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배정받을 수 있다.

[제 2 항] 제 1 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집행한다.

[제 3 항] 지금까지 연방철도의 근거리철도여객운송의 영역에 속하는 임무의 수행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방의 사항이다. 철도교통행정에 상응하는 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143b 조] 연방우편의 전환

[제 1 항] 독일연방우편의 특별재산은 연방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법적(私法的) 기업으로 전환된다. 연방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적(專屬的)인 입법권을 가진다.

[제 2 항]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하던 연방의 전속적 권리들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경과기간(經過期間) 동안 독일 연방우편 “포스트디anst(POSTDIENST)”와 독일 연방우편 “텔레콤(TELEKOM)”으로부터 출연(出捐)된 기업에 양도될 수 있다. 독일 연방우편 “포스트디anst(POSTDIENST)”의 후신기업(後身企業)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자본을 연방은 빠르면 이 법률이 발효하고 5년이 지난 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을 필요로 한다.

[제 3 항] 독일 연방우편에서 활동하는 연방공무원은 그 법적 지위와 사기업(私企業)의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종사한다. 기업은 고용당국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144 조] 비준

[제 1 항] 이 기본법은 우선 적용될 독일 각 지방(支邦)의 3분의 2에서 국민대표에 의한 수락(受諾)을 필요로 한다.

[제 2 항] 이 기본법의 적용이 제 23 조에 열거된 지방의 하나에서 또는 이들 지방의 일부에서 제한될 때에는, 당해 지방 또는 지방의 일부는 제 38 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그리고 제 50 조에 따라 연방참사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45 조] 공포

[제 1 항] 헌법제정회의는 대(大)-베를린 대표의 참여하에 공개회의에서 이 기본법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공포한다.

[제 2 항] 이 기본법은 공포일⁶의 경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항] 이 기본법은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⁶ 1949년 5월 23일 공포 (연방법률공보, 1쪽).

[제 146 조] 헌법으로의 교체

독일의 통일과 자유의 완성에 따라서 전체 독일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의하여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된 헌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번역: 2005 년 5 월

박진애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박사과정 (헌법전공)

Übersetzung: Berlin im Mai 2005

Dipl. Jur. Frau Jinae Park

(Praktikantin im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Promotionsstipendiatin der Hans-Böckler-Stiftung/

Doktorandin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